

# 한·EU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

## EU산 냉동 삼겹살 관세 10년에 걸쳐 관세 폐지

2009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

■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이 2009년 10월 15일(목) 벨기에 브뤼셀에서(한국시간 17:30) 양국 통상장관 간에 이루어진다.

■ 최종합의안에 농림수산물 분야는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관세 존속 기간 장기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했고, 즉시철폐 대상은 교역비중이 적은 품목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에서 선별했다.

\*공산품은 기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모든 관세철폐

■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 23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정식 서명 후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 <농산물 양허>

■ 우리나라는 총 1,449개 농산물 품목(HSK 기준) 중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대두(487%), 보리(324~299.7%), 감자(304%), 인삼

(754%~222.8%), 제주산 감귤(온주 밀감)(144%), 흑설탕(40%) 9개 품목은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양허제외 및 현행유지 10개 : HSK 기준 약 42개, 국내생산 비중(2007년) 33.5%

○ 냉동삼겹살(25%), 사과(45%), 배(45%), 쇠고기(40%), 맨더린(감귤류)(144%) 등 458개 품목은 관세 존속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했으며,

\*10년 이상 장기폐지 : HSK 기준 458개(31.2%), EU 수입액 비중 30.5%

○ 분유(176~89%)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치즈(36%) 등 일부 낙농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0년 이상에 걸쳐 폐지하면서 무관세 물량(TRQ ; Tariff Rate Quota)을 배정키로 했다.

\*낙농품 무관세 물량 : <붙임2> 참조

○ 특히, 오렌지(50%), 포도(45%) 등에 대해서는 같은 북반구 국가로서 생산·유통 기간이 비슷한 점을 감안, 우리의 성출하기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관세를 장기간 완만하게 감축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 한국이 7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하는 농산물 품목은 966개(HSK 기준 : 품목비중 65.9%)이며,

○ 이 가운데 스카치위스키(20%), 꼬냑(15%), 마가린(8%), 커피(8%), 초코렛(8%), 밀가루(4.2%) 등은 3~5년간 균등하게 관세가 감축되고, 홍차(40%), 커피원두(2%), 포도주스(45%) 등은 관세가 즉시 폐지된다.

\* 즉시폐지 : HSK 기준 613개(41.8%), 對 EU 수입액(2006~2008) 비중 약 19.3%

■ 보 리(맥주맥(513%)·맥아(269%)), 감자전분(455%), 변성전분(385.7%), 냉장 돼지고기(22.5%), 사과(45%), 인삼(754.3%), 쇠고기(40%), 발효주정(270%)에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gricultural Safeguard)를 설정해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EU는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에 폐지하기로 했으며,

○ 對 EU 주요 수출품목인 라면(6.4%+24.6/100kg, €), 면류(6.4%+9.7/100kg, €), 비스킷(9%), 간장(7.7%), 난초(6.5%), 음료(9.6%) 등에 대해서 EU측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 EU 즉시 폐지 : EU 세번 기준 약 1,896개 품목(92%), 對 EU 수출액 기준 86%

## 〈수산물 양허〉

■ 수산물 분야에서는 냉동 오징어(24%), 냉동 민어(57%), 냉동 명태(30%)에 대해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 냉동 고등어(12년)(10%), 냉동볼락(10%) 등은 관세 양허기간을 10년 이상, 골뱅이는 5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 현행관세, 10년 이상 장기철폐 : HSK 기준 123개(잠정 28%), 對 EU 수입액 기준 11%

\* 對 EU 수산물 교역(2007~2008) : 수입 약 89백만 달러, 수출 1억 1백만달러

■ EU는 우리의 주 수출 품목인 다랑어류(22~20%), 오징어(6%), 조제 수산물(22%)에 대한 관세를 3년 이내에 폐지하도록 합의했다.

\* 3년 내 조기폐지 : EU 산 기준 276개(72.6%), 對 EU 수출액 기준 95%

## 〈임산물 양허〉

■ 우리는 목재류 227개 품목(12~8%)에 대해서는 5~7년간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 5~7년 목재류 : HSK 기준 228개(목재류 318개중 72%), 對EU 수입액 비중 93.7%

○ 밤(219.4%), 잣(566.8%), 대추(611.5%) 등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15년 이내에 관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 EU는 합판 등 목재류 41개 품목(10~6%)은 3년간 폐지하고 나머지 임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 〈농수산물 원산지〉

■ 신선 농산물은 제3국산의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 예컨대, 채소, 과일, 화훼 등 경종 작물은 당사국이나 EU 역내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작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특혜 관세가 인정된다.

○ 축산물도 역내에서 출생, 사육된 경우에만 원산지 특혜 관세가 인정되며, 역외국에서 수입하여 도축한 경우에는 인용되지 않는다.

■ 라면, 비스킷, 장류, 생선묵 등 가공 농수산물은 기준을 완화해 제3국산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 〈위생·검역〉

■ 위생 및 검역 분야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상의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수입요건 부과, 병해충 무발생·저발생 지역 개념을 인정하는 절충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 양측은 수입국의 일반적인 수입요건(The general import requirements)에 대해 수출국의 영역 전체에 걸쳐 적용하고, WTO/SPS

협정 등의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 국가별 또는 지역별 동·식물 위생상황을 수입국이 결정하고, 그 위생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특정수입요건(Additional specific import requirements)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 한편, 병해충 무발생·저발생 지역을 인정하는 '지역화(Regionalization)' 개념을 인정하고, 지역화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호 지역화 인정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신뢰 구축 활동을 약 2년간 하기로 했다.

### <영향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최종 협상결과가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이 매년 조금씩 커져서 15년차에는 2,481억원~3,17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 발효 15년차에 관세가 완전철폐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농산물 생산감소액은(KREI)은 2,369~3,06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5년차 생산감소액 : 999~1,127억원 수준)
  - \* 농산물 생산감소액 중 돼지고기, 낙농품, 양돈, 쇠고기 등 축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94%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수산물의 경우 생산감소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11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대책 및 향후계획>

- 농식품부는 지난 7.14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EU FTA 대책 T/F(팀장 제2차관)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왔다.
  - 국내 양돈·낙농·양계·한육우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쟁력제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9차례 T/F 대책반 실무협의회, 6차례 낙농대책 실무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보완대책(안)을 마련하였다.

- 이 중,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하게 시행이 필요한 사업 예산 958억원을 2010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 \* 학교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 무병·우수 종축 공급을 위한 원종돈 및 모든 전문농장 육성 지원,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소모성질환백신 지원 등
- 양돈은 축사시설 현대화,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 무병·우수종돈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네덜란드나 덴마크 수준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 돼지열병 청정화로 돼지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돼지열병 항원·항체검사 확대, 농가별 고유번호 부여 및 고유번호 문신 의무화를 통해 방역에 대한 농가의 관심을 높이고, 야생 멧돼지 예찰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낙농산업의 장기적인 수급안정 기반구축을 위해 전국 쿼터제를 도입하고, 국산유제품에 대한 안정적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 신규 유제품 개발, 학교우유급식 확대, 낙농체험 관광사업 및 목장형 유가공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젖소개량, 시설 현대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 등을 위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 양계는 2kg 이상의 대형닭 생산 확대 및 폐사를 감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 종계장·부화장의 난계대 전염병(가금티푸스, 추백리 등) 및 뉴켈슬병을 조기에 근절하고, 닭고기 수출 확대를 위해 도계장·가공장의 위생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한육우는 생산비 및 유통비를 절감을 위해 2008년에 수립한 한우산업발전대책 및 육우산업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육우 명칭을 바꾸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림수산물식품부는 12월말까지 한·EU FTA 대책T/F 회의를 개최하여 기 마련한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생산자단체·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한·EU FTA 보완대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렇게 마무리된 보완대책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되고, 2010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EU FTA 협정문 정식 서명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다.

**[붙임 1] 한·EU FTA 협상 추진 경과**

- 2007. 5월 협상 개시 후 2009. 3월까지 2년간 8차례 협상 진행
  - 제1차(2007.5)협상에서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한 의견 교환
  - 제2차(2007.7)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 논의 시작
    - 농수산물을 포함한 상품 분야 1차 양허안 일괄 교환(2007.7)
  - 제3차(2007.9)협상에서 수정 양허안을 제시하고 품목별 협상 시도
  - 제4차(2007.10)협상에서 민감 품목 중심으로 양허배경을 설명
    - 민감품목에 대한 다양한 예외적 조치 요구, 특히 돼지고기, 낙농품, 골뱅이, 고등어 등 일부 축수산물에 대한 국내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
  - 제5차(2007.11)에서는 상품양허, 자동차표준, 공산품 원산지기준이 쟁점
    - 농수산물은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조치 등 우리측 요구사항을 양허 개선안과 함께 묶어 조건부 일괄타결안을 제시
  - 제7차(2008.5)협상에서 상품양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자동차 관세와 표준문제에 대

- 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 통상장관회담(2009.1)에서 상품양허, 관세 환급, 원산지, 자동차 비관세, 서비스 등 잔여핵심 쟁점에 대해 상대방부분 의견 접근
- 최종 제8차 협상(2009.3.23~24)에서 관세환급, 농산물양허 등 일부 잔여쟁점 외 대부분 합의 도출
- 대통령 유럽 순방(2009.7.7~14)을 계기로 사실상 타결을 이루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10.15, 브뤼셀에서 가서명
  -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19일 주간), 23개국 언어로 번역작업(3~4개월 소요)을 거쳐 정식 서명(내년 상반기) 전망

**[붙임 2]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 개요(잠정)**

- 돼지고기 : 종류별로 5~10년간 관세 유지
  - 냉동삼겹살 10년, 냉장삼겹살·목살은 10년간 관세를 유지하되, 수입 급증 시 농산물 Safe Guard(ASG) 발동, 냉동족 및 밀폐용기 제품 6년, 기타 5년 등으로 차별화
    - \* 한·미 FTA : 냉장삼겹살·목살(10년+ASG), 그 이외(2014.1.1일 관세철폐)
    - \* EU산 냉동삼겹살 수입(2008) : 2.8억불 (EU산 돼지고기 전체 수입액 : 4억불)
- 낙농품 : 양허기간을 장기화하는 대신 무관세 물량(TRQ)을 설정

세부 품목(관세율)	한·EU FTA 논의내용
혼합분유(36%)	10년
탈·전지(176), 연유(89)	현행유지 + TRQ(1,000톤)
치즈(36)	15년(체다치즈 10년)+TRQ(4,560톤)
버터(89)	10년 + TRQ(250톤)
유장(49.5)	10년 + TRQ(3,350톤)

\* EU산 낙농품유제품 수입(2008) : 1.9억불

- 과수 : 사과, 배, 오렌지에 대하여는 한·미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
  - 사과(45%) : 후지 20년 + ASG, 기타 품종 10년 + ASG
  - 배 (45%) : 동양배 품종 20년, 기타 품종 10년

관세 유지

○ 오렌지(50%) : 계절관세 기간(9월~2월) 중 현행관세 유지 및 TRQ 제공, 비성수기(3월~8월)는 7년 관세 유지

○ 감귤(14%) : 온주밀감 현행관세 유지, 맨더린 15년 관세 유지

■ 기타 : 쌀은 양허제외, 대두·보리·감자·고추·마늘·양파·인삼 등 주요 품목(9개)의 핵심세 번(식용 및 신선)은 현행관세 유지 합의

[붙임 3] 우리측 수산물 양허 개요(잠정)

■ 현행관세 유지 품목 : 냉동 민어 등 3개(품목수 대비 0.7%)

○ 현행 수입액이 많지 않으나, 조정관세 품목으로, 수입 증대 시 국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

- 냉동 민어(관세 53%), 냉동 오징어(관세 22%), 냉동 명태(관세 30%)

■ 12년 양허 품목 : 냉동 고등어 등 2개(품목수 대비 0.5%)

○ 현행 수입액이 다소 많으나, 한미 수준으로 보호 가능한 품목은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 한미 수준의 장기 양허를 확보

- 냉동 고등어(12년 비선형, 8+4), 냉동기타넙치(12년 비선형+TRQ)

■ 10년 양허 품목 : 냉동 불락, 냉동 가자미 등 118개(품목수 대비 26.5%)

○ 냉동 불락, 냉동 가자미, 냉동 새우 등 국내 주요 대중 어종

○ 현재 거의 수입되고 있지 않더라도, 향후 FTA 양허 선례 등을 위해 보호 필요가 있는 품목(냉동 갈치, 냉동 삼치, 냉동 홍어 등)

■ 7년 양허 품목 : 냉동 청어, 조제 멸치 등 19개(품목수 대비 4.2%)

○ 어류 조제품, 현재 수입액이 미미하나 EU 생산이 많은 품목

■ 5년~3년 양허 품목 : 골뱅이류, 참다랑어 필렛 등 252개(품목수 대비 56.9%)

○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품목, 대EU 수입이 미미하고, 수입증가 가능성이 적은 품목, 기타 조제 품목 등

■ 즉시 폐지 품목 : 패각류 및 브라인쉬림프 알 등 50개(품목수 대비 11.2%)

○ 무세 품목, 패각류 및 국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브라인쉬림프 알 등)

[붙임 4]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 총괄

양허유형	품목수		수입액		수입액		주요 품목	
			(2006~2008평균)		(2004~2006평균)			
	개	%	천\$	%	천\$	%		
일반 절제	0	613	41.81	322,384	19.27	266,079	19.51	토마토 조제품, 홍차, 동물, 수목, 화훼, 사료, 종자, 중유, 중돈, 원피, 양모, 면, 라임, 밀, 커피원두, 라면, 포도주, 포도주스, 소주 등
	2	3	0.20	9	0.00	2	0.00	애버카도우(신선), 레몬, 자두(건조)
	3	13	0.88	277,490	16.59	243,909	17.88	스카치위스키, 버본위스키, 개, 닭, 마가린, 밀가루, 오렌지주스 등
유형	5	287	19.58	489,326	29.25	380,487	27.9	돼지고기 기타, 올리브유, 카세인, 커피, 유채유, 간장, 김치, 배추, 꼬냑, 파인애플, 초코렛 등
	6	3	0.20	12,381	0.74	13,254	0.97	돼지고기(냉동족, 밀폐용기제품), 호도(탈각)
	7	47	3.21	58,553	3.5	43,148	3.16	돼지고기(냉장식용설육), 토마토, 아이스크림
	소계	966	65.88	1,160,143	69.35	946,879	69.42	

양허유형	품목수		수입액		수입액		주요 품목	
			(2006~2008평균)		(2004~2006평균)			
	개	%	천\$	%	천\$	%		
장기 철폐 유형	10	274	18.69	361,935	21.64	285,694	20.95	돼지고기(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 냉장도살), 심계탕, 닭고기(냉장가슴, 냉동닭다리), 감귤주스, 딸기주스, 된장, 망고, 인삼차, 인삼가공, 인조꿀, 혼합분유 등
	12	16	1.09	300	0.02	148	0.01	닭고기(냉장), 혼합주스(포도), 조제분유, 수박
	13	27	1.84	15,567	0.93	17,169	1.26	닭고기(냉동날개, 냉동가슴), 오리고기, 대추(냉동), 고구마, 인삼가공품(백삼) 등
	15	92	6.28	24,906	1.49	24,809	1.82	쇠고기, 전분, 사료용근채류, 조란, 녹각, 키위, 혼합조미료, 맨더린, 대추, 밀크와 크림, 매너옥, 잣 등
	16	1	0.07	240	0.01	145	0.01	백설탕
	18	7	0.48	18	0.00	13	0.00	녹차, 생강, 참깨, 땅콩, 참기름
	20	2	0.14	-	0.00	-	-	후지사과, 동양배(그 외 사과, 배는 10년)
	10+TRQ	11	0.75	19,870	1.19	13,153	0.96	유장, 버터, 조제분유
	12+TRQ	8	0.55	51,167	3.06	44,427	3.26	보조사료, 사료용조제품(기타), 변성전분
	15+TRQ	6	0.41	30,752	1.84	25,505	1.87	치즈, 보리(맥주맥·맥아)
	소계	444	30.3	504,755	30.18	411,063	30.14	
관세철폐 소계	1,410	96.18	1,664,898	99.53	1,357,942	99.56		
예외적 유형	계절관세	1	0.07	-	0.00	-	-	포도(5월~10.15: 17년, 10.16~4월: 5년)
	계절+TRQ	1	0.07	620	0.04	322	0.02	오렌지(9월~2: 현행+TRQ, 3월~8: 7년)
	현행+TRQ	12	0.82	4,012	0.24	2,823	0.21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현행관세	26	1.77	44	0.00	16	0.00	대두, 보리, 감자, 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인삼, 흑설탕
	양허제외	16	1.09	3,016	0.19	2,713	0.21	쌀 및 쌀 관련 제품
예외적 유형 소계	56	3.82	7,692	0.47	5,874	0.44		
총 합계	1,466	100	1,672,590	100	1,363,816	100		

[붙임 5] 우리측 수산물 양허안 총괄

양허유형	품목수		수입액		수입액		주요 품목	
			(2006~2008평균)		(2004~2006평균)			
	개	%	천불	%	천불	%		
일반 철폐 유형	0	50	11.2	8,722	10.1	5,605	6.8	참다랑어(냉동), 검정대구(냉동), 패각류, 해파리(염수장) 등
	3년	141	31.9	25,492	29.4	16,733	20.3	이빨고기(냉동), 참다랑어 필렛(냉동), 캐비어 대용물, 어류 웨이스트 가다랑어(참치캔재료) 등
	5년	111	25	42,880	49.5	42,020	51	골뱅이(조제), 기타조제연체, 해조류, 기타어류피레트(냉동), 굴(건조), 전갱이(밀폐) 등
	7년	19	4.2	249	0.3	119	0.1	새꼬리민태(냉동), 멸치(밀폐)
	소계	321	72.3	77,343	89.3	64,477	78.2	
장기 철폐 유형	10년	118	26.5	4,220	4.9	5,151	6.2	볼락(냉동), 기타새우와보리새우(냉동), 가오리(냉동), 홍어(냉동), 기타어류(냉동), 뱀장어(활) 등
	12년	2	0.5	4,797	5.5	12,714	15.4	냉동 고등어(비선형 : 8년 현행 + 4년 감축), 냉동 기타넙치 (비선형 : 8년 현행 + 4년 감축 + TRQ)
	소계	120	27	9,017	10.4	17,865	21.6	

양허유형	품목수		수입액		수입액		주요 품목	
			(2006~2008평균)		(2004~2006평균)			
	개	%	천불	%	천불	%		
관세철폐 소계	441	99.3	86,360	99.7	82,342	99.8		
예외적 유형	현행 관세	3	0.7	238	0.3	194	0.2	냉동 오징어(22%), 냉동 민어(53%), 냉동 명태(30%) * 조정관세 품목으로 민감성이 큼
제외 소계	3	0.7	238	0.3	194	0.2		
총합계	444	100	86,598	100	82,536	100		

**[붙임 6] 우리측 농산물 품목별**

**세부내용(수입액 : 2006~2008 평균)**

**〈식량작물 품목별 협상결과〉**

**■ 쌀**

- 쌀 및 쌀 관련 16개 세 번은 협상에서 제외
- 쌀 조제품(찐쌀 포함) 10년, 배아 5년, 미강 즉시 폐지

**■ 대두**

- 식용대두(487%)는 현행관세유지, 대두유(5.4~8%, 정제유 등)는 5년 철폐, 기타 대두(20~27%)는 5년 폐지
- ※ 식용대두(487%) : 없음, 대두유(정제유 등) : 382천 달러, 기타 대두(콩 신선/조제저장처리) : 821천달러

**■ 감자·감자분**

- 식용감자(304%)는 현행관세유지, 냉동 및 건조감자는 5년 폐지
- 감자분(304%)은 13년 철폐, 감자 플레이크(304%) 10년 폐지
- ※ 식용감자 : 없음, 감자(냉동/건조) : 없음, 감자분 : 59천달러

**■ 보리**

- 겉보리(324%)·쌀보리(299.7%)는 현행유지, 보리 기타(299.7%)는 13년
- ※ 가공용 보리(260%) 10년, 제빵용 보리가루는 5년
- ※ 제빵용 보리가루 : 27천달러

**■ 옥수수**

- 사료용 옥수수(328%)는 5년 폐지, 팝콘용(630%), 옥수수 기타(328%)는 13년, 옥수수가

루(167%)는 10년

- ※ 사료용 옥수수 : 278천달러, 옥수수기타 : 5,979천달러, 옥수수가루 : 50천달러

**■ 전분**

- 밀 전분(50.9%)은 5년 폐지, 감자 전분(455%)은 15년 철폐+ASG, 옥수수(226%), 고구마(241%), 매니옥(455%) 등 기타전분은 15년 폐지
- 변성전분(385.7%)은 12년+ASG
- ※ TRQ : 2.8만톤(2004~2006 평균수입액×80%)
- ※ 밀전분 : 15천달러, 감자전분 : 21,658천달러, 기타(옥수수 등) : 360천달러
- ※ 변성전분 : 31,951천달러

**■ 맥아·맥주맥**

- 맥아(269%), 맥주맥(513%) 15년+ASG.
- ※ TRQ : 1만톤(2004~2006 평균수입액×98%)
- ※ 맥아 : 699천 달러

**■ 기타**

- 15년 철폐
- 팥(420.8%), 녹두(607.5%), 메밀(256.1%), 울무(800.3%), 발효주정(270%) 등

**〈육류 품목별 협상결과〉**

**■ 쇠고기**

- 민감한 6개 세 번(40%) : 15년 + ASG
-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 육우(40%)와 식용설육(족·꼬리 등)(18%), 쇠고기 가공품(30~72%) 등 : 15년

**■ 돼지고기**

- 냉동삼겹살(25%) : 10년 폐지, 냉장삼겹살·목살(22.5%) : 10년 + ASG

- 냉동족(18%), 밀폐용기의 것(30%) : 6년
- 기타 부위(22.5%~30%) : 5년 폐지
- ※ 냉동삼겹살 : 261,109천달러, 냉장삼겹·목살 : 1,136천달러, 냉동족 및 밀폐용기 : 12,381천, 기타부위 : 126,018천달러

#### ■ 닭고기

- 냉동(가슴살, 날개)(20%) : 13년 폐지
- 냉장육(18%),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20%), 닭고기 가공품(30%) : 10년
- 삼계탕(30%) : 10년 폐지
- ※ 냉동(가슴살, 날개)수입액 : 4,282천달러, 냉동(다리, 기타 절단육) : 334천달러

#### ■ 계란

- 계란(27~41.6%) : 15년 폐지
- 난황(27%) : 13년 폐지
- 종란 등 기타(27%) : 10년 폐지
- ※ 계란 수입액 225천달러, 난황 수입액 : 357천달러, 종란 등 기타(4개 세 번) : 86천달러

#### ■ 기타육류

- 오리고기(18~22.5%) : 미절단 냉동육 13년, 미절단 냉장육 12년, 절단 냉장육 10년, 절단 냉동육 13년 폐지
- 산양·면양고기(22.5%) : 10년 폐지
- 칠면조고기(18~30%) : 7년 폐지
- 녹용·녹각(20%) : 15년 폐지
- ※ 오리고기(9개 세 번) : 417천달러, 칠면조고기 : 145천달러

#### 〈낙농품, 꿀, 사료 품목별 협상결과〉

##### ■ 분유·연유·유당

- 탈지분유(176%)·전지분유(176%)·연유(89%) : 현행관세 유지
  - 무관세쿼타(TRQ) 제공 : 1,000톤(2004~2006 평균수입액×90%)
- 혼합분유(36%) : 10년 폐지
- 조제분유(36~40%) : 10년 폐지
  - 무관세쿼타 제공 : 450톤(2004~2006 평균 수입액×100%)
- 유당(20~49.5%) : 5년 폐지

- ※ 탈지분유 수입액 : 3,191천, 전지분유 : 643천, 연유 : 82천, 혼합분유 : 59,511천, 조제분유 : 1,501천, 유당 : 6,527천달러

##### ■ 치즈

- 체다, 커드 및 블루바인 치즈(36%) : 10년 폐지
- ※ 체다 치즈는 TRQ 제공(통합)
- 커드 및 블루바인을 제외한 다른 치즈(36%) : 15년 폐지
  - 무관세쿼타(TRQ) 제공 : 4,560톤(2004~2006 평균수입액×100%)
- ※ 치즈(커드·블루바인 제외) 수입액 : 30,053천달러, 커드/블루바인치즈 : 13천달러

##### ■ 밀크와 크림

- 밀크와 크림(지방함량 6% 이하)(36%) : 15년 폐지
- 크림 기타(지방함량 6% 초과)(36%) : 13년 폐지
- 냉동 크림(지방함량 6% 초과)(36%) : 10년 폐지
- ※ 크림 기타 : 873천달러, 냉동크림 : 10천달러

##### ■ 버터

- 버터(89%) : 10년 폐지
  - 무관세쿼타(TRQ) 제공 : 350톤(2004~2006 평균수입액×100%)
- ※ 데어리 스프레드(8%) : 즉시 폐지
- ※ 버터 수입액 : 1,696천달러, 데어리스프레드 : 187천달러

##### ■ 유장

- 유장(49.5%) : 10년 폐지
  - 무관세쿼타(TRQ) 제공 : 3,350톤(2004~2006 평균수입액×39%)
- ※ 유장 수입액 : 16,673천달러

##### ■ 꿀

- 천연꿀(243%) : 현행관세, 무관세쿼타(TRQ) 제공 : 50톤
- 인조꿀(243%) : 10년 폐지
- ※ 천연꿀 수입액 : 96천달러

##### ■ 사료품목

- 사료용 근채류(100.5%) : 15년 폐지
- 보조사료(50.6%) : 12년 폐지
  - 무관세쿼타(TRQ) 제공 : 5,500톤(2004



~2006 평균수입량×90%)

- 사료용 옥수수(328%), 대두(채유 및 박용)(487%) : 5년 폐지
- ※ 사료용 근채류 : 310천달러, 보조사료 : 10,307천달러, 사료용 옥수수 : 278천달러

〈과일·과채류 품목별 협상결과〉

■ 오렌지

- 오렌지(50%)
  - 성출하기(9~2월) 현행관세유지
  - 계절관세 + 무관세쿼타(TRQ) 제공(20톤)
- 오렌지주스(54%) : 3년 철폐, 혼합주스(70%) : 7년
- ※ 오렌지 수입액 : 620천달러, 오렌지주스 : 820천달러

■ 감귤

- 온주밀감(144%) : 현행관세 유지, 맨더린 : 15년
- 감귤주스(54%) : 10년 철폐, 조제저장처리 감귤(45%) : 5년 폐지
- ※ 감귤(조제저장처리) : 123천달러, 감귤주스 : 36천달러

■ 사과

- 사과(45%) : 후지 20년 철폐(23년 ASG), 기타 10년(10년 ASG)
- 사과주스(45%) : 브릭스 20 이내 10년 폐지, 브릭스 20 초과 7년 폐지
- 사과(조제저장처리)(45%) : 5년 폐지
- ※ 사과 수입 : 없음, 사과주스 : 274천달러, 사과(조제저장처리) : 209천달러

■ 배

- 배(45%) : 동양배 20년, 기타품종 10년
- 조제저장처리 배(45%) : 7년 폐지
- ※ 배(조제저장처리) : 135천달러

■ 키위

- 키위(45%) : 15년 폐지

■ 포도

- 포도(45%)
  - 계절관세, 성출하기(5~10·15일) 17년 폐지
- 포도주(15%), 포도주스(45%) : 즉시 폐지
- 포도(조제저장처리) : 5년 폐지

- ※ 포도(신선) 수입 : 없음, 포도주 : 81,328천달러, 포도주스 : 5,315천달러, 포도(조제저장처리) : 15천달러

■ 복숭아·단감·감

- 복숭아(45%), 단감(45%), 감(50%) : 10년 폐지
-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 것)(50%) : 7년 폐지
  - 복숭아(기타 조제저장처리)(45%) : 5년 폐지
  - 복숭아주스(50%) : 10년 폐지
- ※ 복숭아(설탕첨가/밀폐용기의 것) : 2,129천달러, 복숭아(조제저장처리) : 34천달러, 복숭아주스 : 123천달러

■ 딸기

- 신선초분류 딸기(45%) : 10년 철폐, 나무딸기(신선)(45%) : 10년
- 냉동딸기(30%) : 5년 폐지
- 초분류딸기(일시저장처리)(30%) : 즉시 폐지, 딸기주스(50%) : 10년
- 딸기(조제저장처리)(45%) : 7년 폐지
- ※ 신선초분류딸기/나무딸기(신선) 수입 : 없음, 딸기(냉동) : 11천달러, 딸기주스 : 353천달러, 딸기(조제저장처리) : 366천달러

■ 토마토

- 신선 및 냉장(45%) : 7년 폐지
- 조제저장처리, 토마토 주스(30%) : 5년 폐지
- 케첩(8%), 소스(45%), 페이스트(5%) : 즉시 폐지
- ※ 토마토(주스, 조제저장처리) : 4천달러, 토마토(케첩, 소스, 페이스트) : 6,317천달러

■ 오이

- 오이(27~30%) : 즉시 폐지
- ※ 오이(조제저장처리) : 104천달러

■ 가지

- 가지(27%) : 즉시 폐지

■ 호박

- 신선호박(27%) : 즉시 철폐, 건조호박(30%) : 10년

■ 수박

- 수박(45%) : 12년 폐지

〈양념채소·인삼·특작 품목별 협상결과〉

■ 고추

- 신선고추, 파프리카, 건조고추, 고춧가루 (270%) : 현행관세유지
- 냉동고추(27%) : 15년 폐지
- ※ 고추(핵심 5개 세 번) : 27천달러

■ 마늘

- 통마늘·깎마늘·일시저장·건조마늘(360%) : 현행관세유지
- 냉동마늘(27%) : 15년 폐지
- 조제저장처리 마늘(30%) : 10년

■ 양파

-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현행관세유지
- 냉동양파(27%) : 12년 폐지
- 조제저장처리 양파(30%) : 5년 폐지
- ※ 조제저장처리 양파 : 81천달러

■ 생강

- 신선 생강(377.3%) : 18년 폐지
- 설탕저장처리 생강(30%) : 즉시 폐지

■ 파

- 건조 파(30%) : 7년 폐지
- 쪽파·기타 파속채소(27%) : 즉시 폐지
- ※ 건조파 수입 : 6천달러

■ 인삼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삼류(본삼, 미삼, 잡삼)(222.8%) : 양허 제외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타블렛 등 홍삼가공품 6개 품목(754.3%) : 15년 폐지 및 ASG(8년)
- 백삼분(18%) : 15년 폐지
- 인삼차(8%) : 즉시폐지

■ 참깨·참기름·땅콩·녹차

- 참깨(630%) : 18년 폐지
- 참기름(630%) : 18년 폐지
- 녹차(513.6%) : 18년 폐지

〈화훼류·엽근채류 품목별 협상결과〉

■ 백합

- 휴면(8%), 절화/신선(25%) : 즉시폐지

※ 휴면 수입액 : 5,929천달러

■ 튜립

- 휴면(4%), 절화/신선(25%) : 즉시폐지
- ※ 휴면 수입액 : 1,262천달러

■ 당근

- 당근(30%) : 5년 폐지 (건조 7년, 일시저장처리 10년)
- ※ 당근(건조) : 362천달러

■ 무

- 무(30%) : 즉시 폐지 (건조는 7년)

■ 배추

- 배추(27%) : 5년 폐지

■ 채소류 혼합물·순무·양배추

- 채소류 혼합물·순무·양배추(27%) : 즉시 폐지

■ 기타

- 연뿌리(30%), 고구마줄기(30%), 토란줄기(30%) : 즉시 폐지

■ 기타채소

- 냉동·일시저장처리(27%) : 즉시 폐지
- 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20%) : 5년 폐지
- 건조(30%)는 7년, 신선/냉장(27%)은 5년 폐지
- ※ 기타채소(냉동/일시저장처리) : 149천달러, 기타채소(조제저장처리) : 209천달러, 기타채소(건조) : 325천달러

■ 채소 혼합주스·기타채소 혼합물·균질화한 채소

- 혼합주스(30%), 기타채소혼합물(30%) : 즉시 폐지
- 균질화한 채소(20%) : 5년 폐지
- ※ 혼합주스 수입 : 40천달러, 기타채소혼합물 : 1,425천달러

〈기타 가공식품 품목별 협상결과〉

■ 설탕

- 백설탕(40%) 16년차에 철폐+ASG 20년간 적용
- 흑설탕(40%) : 현행관세유지
- ※ 백설탕 수입 : 240천달러, 흑설탕 : 17천달러

▣ 대두유·옥수수유

- 대두유(5.4%) : 조유는 10년, 정제유는 5년 폐지
- 옥수수유(8%) : 5년 폐지
- ※ 대두유(조유) 수입: 7천달러, 대두유(정제유) : 176천 달러

▣ 혼합조미료

- 혼합조미료(45%) : 15년 폐지
- ※ 혼합조미료 수입액 : 891천달러

▣ 장류

- 된장(8%), 춘장(8%), 간장(8%), 고추장(45%), 기타장류(쌈장, 청국장) (45%) : 5년 폐지

▣ 과자류·빵류·기타식품류

- 초코렛류(8%), 파이와 케이크(8%) 등 : 5년 폐지
- 식빵, 건빵 등 빵류(8%), 볶은 커피(8%) : 5년 폐지
- 기타 커피(8%), 라면(8%), 소주(30%), 포도주 (15%) 등 : 즉시 폐지
- ※ 초코렛류 수입액 : 32,868천달러, 파이와 케이크 : 1,521천달러, 빵류 : 290천달러, 포도주 : 81,328천 달러, 볶은 커피 : 7,021천달러

[붙임 7] 한·EU간 교역 현황(2008)

우리와 주요국간 전체 교역현황

국가	총교역액 (비중)	수출	수입	수지
(전체)	8,573 (100.0%)	4,220	4,353	-133
중국	1,683 (19.1%)	914	769	145
EU	984 (11.5%)	584	400	184
미국	847 (9.9%)	464	384	80
일본	892 (10.4%)	283	610	-327

한·EU 산업별 교역현황

(단위: 억달러)

구 분	합 계	공산품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수 출	584	582	0.74	0.06	1.0
수 입	400	379	17.76	1.94	0.9
수 지	184	203	-17.02	-1.88	0.1

한·EU 10대 교역품목 현황 (2008년, MTI 4단위)

(단위: 억달러)

수출품목(관세율)	금액	비중	수입품목(관세율)	금액	비중
선박(0~2.7%)	100	17.2%	의약품(8%)	16	4.0%
무선전화기(0%)	75	12.8%	반도체제조용장비(0%)	16	3.9%
승용차(10%)	52	8.9%	자동차부품(8%)	15	3.9%
평판디스플레이(3.7%)	39	6.7%	승용차(8%)	15	3.9%
자동차부품(1.7~4.5%)	24	4.1%	기타정밀화학원료(6.5%)	12	3.1%
집적회로반도체(0%)	19	3.3%	집적회로반도체(0%)	12	3.0%
제트유 및 등유(3.5~4.7%)	16	2.7%	기타화학공업제품(6.5%)	10	2.4%
경유(3.5~3.7%)	16	2.7%	원동기(8%)	9	2.4%
칼라TV(14%)	14	2.5%	펌프(8%)	9	2.1%
광학기기부품(2.9~6.7%)	14	2.3%	기타기계류(8%)	8	2.0%
소계	369	63.3%	소계	123	30.7%
전체	584	100.0%	전체	400	100.0%

[붙임 8] 대 EU 농산물 수출입 금액 상위 품목 2006~2008 평균)

(단위 : %, € /100kg, US\$천)

순위	對 EU 수출					對 EU 수입				
	품목	관세율 (2007기준, %)	금액 (천\$)	비중 비중(%)	EU 양허	품목	관세율 (2007기준, %)	금액 (천\$)	비중(%)	한국 양허
1	라면	6.4% + 24.6 € /100kg	4,505	12.9	0	돼지고기	냉동 25 냉장 22.5	408,320	24.4	10/5
2	담배	18.4, 22~24 €	3,974	11.4	5	스카치 위스키	20	246,942	14.8	3
3	기타 식물성 잠질물	0	2,425	7.0	0	낙농 유제품	혼합분유 36 치즈 36 유장 49.5 탈·전지 176 조제분유 36 버터조제품 8	192,242	11.5	10 15(10)+T 10+T 현행+T 10+T 7
4	채소 주스	10.5	2,199	6.3	0	포도주	15	81,328	4.9	0
5	인삼	0	1,823	5.2	0	올리브유	8	62,145	3.7	5
6	기타 화초	10	1,574	4.5	0	전분	감자 455 덱스트린 386	55,023	3.3	12+T /15
7	기타 파스타	6.4 + 9.7 €	1,311	3.8	0	기타 비휘발성 유지	참기름 630 들기름 36	50,930	3.0	18/5
8	기타 버섯	6.4	1,304	3.7	0	일담배	20	34,383	2.1	10
9	국수	7.7 + 21.1 €	1,202	3.5	0	초코렛	8	32,868	2.0	5
10	위스키	0	758	2.2	0	로알 제리	8	23,605	1.4	3
11	채소 종자	3	733	2.2	0	기타 식물성 액즙	8	23,293	1.4	0
12	기타 음료	9.6	718	2.1	0	모피 (밍크)	3	22,972	1.4	0
13	선인장	6.5	691	2.0	0	코코아 조제품	8	20,215	1.2	5
14	고추	5	510	1.5	5	음료 베이스	8	15,502	0.9	0

\* 종가세 환산시 담배는 26.8%에 해당(KREI 제공) \* T : TRQ

[붙임 9] 대 EU 수출입 금액 상위 수산물 품목(2006~2008 평균)

(단위 : %, US\$천)

순위	對 EU 수출					對 EU 수입				
	품목	관세율 (2007기준, %)	금액 (천\$)	비중 비중(%)	EU 양허	품목	관세율 (2007기준, %)	금액 (천\$)	비중(%)	한국 양허
1	황다랑어 (냉동)	22	14,191	16.5	3/0	골뱅이 (기타조제)	20	28,102	32.4	5
2	오징어 (냉동)	6	13,392	15.5	3	참다랑어 필렛 (냉동)	10	22,105	25.5	3
3	기타 (냉동 어류)	15	11,774	13.7	3	참다랑어 (냉동)	10	8,503	9.8	0
4	기타 어류 필렛(냉동)	15	7,068	8.2	5	사료용 어분	5	7,404	8.6	5
5	생선물 (계명)	20	6,403	7.4	3	기타연체 (일때 용기 외)	20	4,174	4.8	5
6	황새치 (냉동)	22	3,956	4.6	3	고등어 (냉동)	10	2,568	3.0	12
7	바지락 (일때)	20	2,707	3.1	3	냉동볼락 (적어 포함)	10	2,518	2.9	10 (비)
8	민어(냉동)	22	2,456	2.9	3	기타남치류 (냉동)	10	2,229	2.6	12 (비)+T
9	계살기타 (통조림, 훈제)	12.8	2,175	2.5	0	이빨고기 (냉동)	10	1,608	1.9	3
10	대구 (냉동)	20	1,867	2.2	0	어류웨이스트 (기타)	8	684	0.8	3